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7
------	------

2019.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소장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장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시립과학관 현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개관되었음.

〈서울시립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 모 : 부지면적 25,875㎡ / 건축연면적 12,330㎡ / 전시면적 4,207㎡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 교육실
지상 2층	3,384.36	상설전시실, 사무실, 커뮤니티 스페이스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 메이커스튜디오, 강당, 교육실, 안내/매표소 등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조직현황 :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직영), 정원 18명/ 현원 18명
- 예산현황 : 33억 9천만원(2019년 기준)
- 총공사비 :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개관 이후 2019년 10월말까지 누적 관람인원은 56만 8,395명(1일 평균 약 716명)으로, 같은 기간 관람료 수입은 총 3억 1천 1백만원임.
- 2018년부터 과학교육프로그램 참여자는 유료관람객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관람료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도 세입예산도 전년대비 7천 1백만원(△35.6%) 줄어든 1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¹⁾.

〈서울시립과학관 연도별 이용인원과 관람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7년 (5월부터)	2018년	2019년 (10월말까지)	합계
이용인원	170,585	213,190	184,620	568,395
관람료 수입	107,197	113,530	90,011	310,738

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감면 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6조제2항2)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기반으로 부칙의 제로페이 감면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
- 1) 2019년도 서울시립과학관의 세입예산 중 입장료수입은 1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0월말 기준 수입은 9천만원에 불과해, 최종 수입도 1억 초반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 2)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 1.~ 2. (생략)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6.~ 8. (생략)
 -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 2018년 12월 시작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과학관을 포함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의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있음.
- 현재 과학관은 제로페이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어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의 50%를 할인하고 있음.
- 제로페이 감면 적용 이후, 10월말 기준 총 7,261명이 제로페이를 사용했으며, 제로페이 결제비율은 전체 매출액(5,611만원)의 14.1%(789만원)에 불과함.

〈서울시립과학관 제로페이 이용현황〉

(단위 : 명, 원)

월 별	방문객 현황			매출현황		제로페이 결제율(%)
	총 계	유료 이용자	제로페이 이용자	총 액	제로페이결제	
계	125,262	45,422	7,261	56,107,000	7,886,550	14.1
5월	23,227	6,604	96	7,886,700	81,200	1.0
6월	13,789	5,330	878	6,518,500	1,009,050	15.5
7월	17,410	7,491	1,481	8,946,500	1,571,500	17.6
8월	36,565	15,012	3,161	20,193,300	3,439,800	17.0
9월	13,233	4,540	764	5,343,650	864,150	16.2
10월	21,038	6,445	881	7,218,350	920,850	12.8

- 당초 서울시는 제로페이³⁾의 저변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시립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연도 말까지 7개월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³⁾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 19개 조례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였음.

〈서울시 제로페이 할인 공공시설의 전체결제 및 할인 실적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전체결제	제로페이 결제	제로페이 할인
금액 (비율)	48,177,350 (100%)	6,150,760 (12.8%)	770,245 (1.6%)

〈제로페이 유효기간 연장 관련 개정조례안 현황〉

연번	조 례 명	운영구분	비고
계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운영비 총당
3	도시공원 조례	직 영	市 수 입
4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출연기관	자 체 수 입
5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운영비 총당
6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7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직 영	市 수 입
8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운영비 총당
9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10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운영비 총당
11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12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직 영	市 수 입
13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직 영	市 수 입

3)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이후 서울시 공공시설의 전체결제 금액 중 제로페이 결제는 12.8%인 61억 5천 1백만원에 그쳐 당초 목표(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

14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운영비 총당
15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직 영	市 수 입
16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17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직 영	市 수 입
18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직 영	市 수 입
19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市 수 입

- 제로페이에 대한 전사적 홍보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이용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제도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사용료 등의 감면보다는 제로페이의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감면기간과 감면율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7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8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8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u> <u>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8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u>2020</u> <u>년 12월 31일</u>-----.</p>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장공인간 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2조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 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117,823천원('18년 입장수입)×17%('19. 7~8월 제로페이 이용률)×30%(감면율)=6,009천원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한유리 (02-2133-5253)